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32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市와 디자인재단으로 나뉘어져 있던 패션지원 정책을 일원화하여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하여 2021년 4월부터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음.
- 나. ‘서울패션허브’는 패션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소공인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핵심시설로 2024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
- 다. 이러한 패션허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패션산업 및 관련 IT 기술과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패션허브’를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위 치 : DDP패션몰(45층) 및 동대문종합시장(B동 4층)
- 사업내용 :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공간(허브시설) 운영
- 규 모 : 창작뜰(1,369㎡) / 배움뜰(1,540㎡) / 창업뜰(3,140㎡)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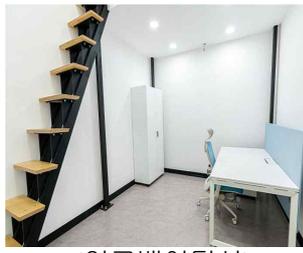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2023.10.13.)
- 추진 필요성
 - 패션허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패션산업 및 패션관련 IT기술과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다.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 대상시설(3개) : 창작뜰, 배움뜰, 창업뜰
- 위탁기간 : 2년 9개월 (2024. 4월 ~ 2026. 12월)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재위탁)
- 위탁금액 : 5,770백만원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 6,320백만원
- 위탁사무
 - 서울패션허브 사업운영,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전반
 - 창작뜰 첨단장비 운용, 장비활용 교육 및 생산·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배움뜰 혁신인재 육성 및 예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창업뜰 입주기업 발굴 및 성장·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동북권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창작뜰(디쓰리디)	배움뜰(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창업뜰(크리에이티브팩토리그룹)
개 소	2021. 4월	2021. 6월	2021. 5월
위 치	DDP패션몰 4층	DDP패션몰 5층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
규 모	1,369㎡(약 415평)	1,728㎡(약 523평)	3,140㎡(약 950평)
사용형태	시 소유	시 소유	민간건물 임차(보증금 4억, 월 173,800천원)
공간구성	자동재단실, 메이커스튜디오, 봉제작업실, 디자인라운지 등	강의실, 디지털학습실, 개인학습실, 인큐베이팅실, 실습실, 소통공간 등	입주공간,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촬영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소 등
비 고	 <정문>	 <실습실>	 <입구>
	 <재단봉제실>	 <인큐베이팅실>	 <입주사 사무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②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패션허브의 위탁기간 만료(2024.3.31.)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서울패션허브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2018.2.24.)에 따라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와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기술을 패션산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패션허브’의 조성을 추진해왔음.
- 당초에는 국·공유 재산교환을 통해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중구 마장로45)’를 ‘서초구 서울소방학교 부지’ 등의 사유지로 분산·이전하고,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산업의 기획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하는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기동대본부 부지’의 공동소유자인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1)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지교환이 지연²⁾됨에 따라 패션허브 핵심기능(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³⁾)을 우선 조성하고, 대안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계별로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2019.10.).

- 이후 중구 구민회관 부지, 미군 공병단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⁴⁾ 대안부지였던 현 위치에서 사업을 지속하게 된 것임.
- 그러나 대안부지에 마련하는 시설별 설계와 착공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7~9개월 개관이 지연되었고, 제작(창작뜰), 교육(배움뜰), 창업 지원(창업뜰)이라는 시설별 운영목적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워 컨소시엄⁵⁾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됨.
- 개관 이후에는 시설별로 비교적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였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75.76점⁶⁾을 획득함.

2) 경찰공제회는 소유지 위치가 변경되면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용적률 상승 등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지교환이 무산됨.

3) 현 창업뜰, 배움뜰, 창작뜰의 시설 조성 당시 명칭임.

4) 중구 구민회관 부지는 중구청이 해당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미군 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로 하면서 서울패션허브 건립이 무산됨.

5) 디쓰리디(창작뜰),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배움뜰), 크리에이티브팩토리그룹(창업뜰), 더웍스(홍보) 컨소시엄

6) 서울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위탁기간 내에 1회(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성과평가의 결과가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재위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패션허브 시설별 운영 실적 >

구분		운영실적			
		2021	2022	2023.9.	합계
창작들	자동재단(건)	217	1,057	979	2,253
	생산장비 이용(명)	997	6,185	6,086	13,268
	다중숙련 제조전문가 양성(명)	564	2,144	128	2,836
	일감연계 지원(업체)	-	84	102	186
	누리집 방문객(명)	-	116,125	120,807	236,932
배움들	교육 수료생(명)	442	1,111	838	2,391
	취업실적(명)	14	62	20	96
	창업실적(명)	12	13	6	31
	예비창업자 선발·지원(명)	16	12	10	38
	매출액(백만원)	-	161	214	375
창업들	스타트업 선발·지원	30	25	55	110
	매출액(백만원)	69,174	72,000	4,158	145,332
	투자유치(백만원)	300	2,400	700	3,400
	지적재산권(건)	33	32	3	68
	고용실적(명)	34	36	13	83
	조기졸업(EXIT) 업체	-	2	-	2

-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고,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라는 서울패션허브 설치목적에 대한 성과가 미약하여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패션허브운영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및 시설별 유사기능 조정, ▶패션비즈랩 및 디자인, 자동재단 실시간 연계 온디맨드 시스템 도입 등 제조업체 디지털 역량강화 및 고도화, ▶산학협력 증대를 위한 기수별 취창업학교, 패션·뷰티워크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함.

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적절성 여부

- 당초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은 올해 말(2021.4.1.~2023.12.31.)까지였으나 재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위탁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남용할 경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권한 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재위탁 여부 결정 지연이 상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패션허브는 패션 관련 3개 시설을 클러스터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당초 사업방향과 달리 사실상 시설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별로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모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3개 시설 중 창업뜰은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1억 7천 4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임대계약

종료(2025.4.) 이후에는 시 소유 재산으로의 이전 등을 통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